학교법인 영남학원

2026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7명	2명
재적임원	7명	2명
참석임원	6명	2명

1. 일시: 2026년 10월 21일(수) 14:00~17:55 (회의소집통보일: 2026년 10월 12일)

2. 장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본부본관 3층 대회의실

3. 임원 출결사항

○ 참석임원

이사(6명): 한재숙, 이인호, 김진삼, 최외출, 김홍대, 최경환

감사(2명): 김영혜, 이성수

○ 결석임원

이사(1명): 김양수

감사(0명)

○ 배석자

김성철(법인 기획조정실장), 이희용(영남대학교 경영전략부총장),
문상혁(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신승훈(영남대학교 대학원장),
박소현(영남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김용대(영남대학교의료원장),
이준(부속병원장), 서완석(영남대학교의료원 기획조정처장),
이시형(영남대학교의료원 사무처장), 박삼국(영천병원장),
이재용(영남이공대학교 총장), 이종락(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4. 안건

<의결사항>

제 1 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 2 호의안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안) 승인의 건

제 3 호의안 2026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제 4 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제 5 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
제 6 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제 7 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제 8 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 9 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제10호의안 영남대학교 (구)약학대학 증축 및 리노베이션(안) 승인의 건
제11호의안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동 신축 변경(안) 승인의 건
제12호의안 영남대학교 명예교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13호의안 영남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14호의안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학과 폐지(안) 승인의 건
제15호의안 영남대학교 특수대학원 학과 신설(안) 승인의 건
<보고사항>
제 1 호 2026학년도 상반기 정기감사 결과 보고의 건
제 2 호 영남대학교의료원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검토(안) 2차 보고의 건
제 3 호 영남이공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
제 4 호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

5. 회의내용

의 장: 재적이사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보고사항>

제1호 2026학년도 상반기 정기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의 장: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보고사항 제1호 2026학년도 상반기 정기감사 결과 보고**를 먼저 받겠다고 하고, 김영혜·이성수 감사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다.

김영혜·이성수 감사: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시행규정 제17조 및 학교법인 영남학원 감사규정에 의거, 2026.09.29.부터 2026.10.08.까지 학교법인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2026학년도 상반기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하고,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보고하다.

의 장: 제1호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보고사항 제1호 2026학년도 상반기 정기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접수한다고 선언하고,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감사결과 보고 내용과 감사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의결사항>

제4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의 장: **제4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고 하고,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추경예산(A)	본예산(B)	증감(A)-(B)
767,535,446,000원	709,901,921,000원	57,633,525,000원

의 장: 제4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4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5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

의 장: **제5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시형 의료원 사무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시형 의료원 사무처장: 영남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 고정자산 폐기(안)

구분	수량	취득가액	잔존가액
차 량 운 반 구	2점	29,448,170원	2,000원
의 료 기 기	13점	791,323,333원	13,000원
합계	15점	820,771,503원	15,000원

의 장: 제5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5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최경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6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의 장: **제6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박삼국 영천병원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박삼국 영천병원장: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고 하고,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추경예산(A)	본예산(B)	증감(A)-(B)
37,710,000,000원	37,400,000,000원	310,000,000원

의 장: 제6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6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최경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보고사항>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제2호 영남대학교의료원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검토(안) 2차 보고의 건

의 장: **보고사항 제2호 영남대학교의료원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검토(안) 2차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다고 하고,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다.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붙임1] 영남대학교의료원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검토(안) 2차 보고의 건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보고하다.

의 장: 제2호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보고사항 제2호 영남대학교의료원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검토(안) 2차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접수한다고 선언하고,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보고 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의결사항>

제7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의 장: **제7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2026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고 하고,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추경예산(A)	본예산(B)	증감(A)-(B)
83,991,739,000원	76,494,874,000원	7,496,865,000원

의 장: 제7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7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최경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8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8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2] 영남이공대학교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8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8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최경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보고사항>

제3호 영남이공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

의　　장: **보고사항 제3호 영남이공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다고 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3] 영남이공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보고하다.

의　　장: 제3호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보고사항 제3호 영남이공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접수한다고 선언하고,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의결사항>

제9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건

의　　장: **제9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희용 영남대학교 경영전략부총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희용 영남대학교 경영전략부총장: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고 하고,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추경예산(A)	본예산(B)	증감(A)-(B)
417,484,694,000원	387,690,114,000원	29,794,580,000원

의　　장: 제9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9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최경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0호의안 영남대학교 (구)약학대학 증축 및 리노베이션(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0호의안 영남대학교 (구)약학대학 증축 및 리노베이션(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희용 영남대학교 경영전략부총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희용 영남대학교 경영전략부총장: [붙임4] 영남대학교 (구)약학대학 증축 및 리노베이션(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0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0호의안 영남대학교 (구)약학대학 증축 및 리노베이션(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사업예산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제11호의안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동 신축 변경(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1호의안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동 신축 변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희용 영남대학교 경영전략부총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희용 영남대학교 경영전략부총장: [붙임5]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동 신축 변경(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1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1호의안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동 신축 변경(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사업예산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12호의안 영남대학교 명예교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2호의안 영남대학교 명예교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6] 영남대학교 명예교수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2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2호의안 영남대학교 명예교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3호의안 영남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3호의안 영남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7] 영남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규정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3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3호의안 영남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최경환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보고사항>

제4호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

의　　장: **보고사항 제4호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다고 하고,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다.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8]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보고하다.

의　　장: 제4호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보고사항 제4호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접수한다고 선언하고,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과 국적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의결사항>

제14호의안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학과 폐지(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4호의안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학과 폐지(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신승훈 영남대학교 대학원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신승훈 영남대학교 대학원장: [붙임9]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학과 폐지(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4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의　　장: **제14호의안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학과 폐지(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5호의안 영남대학교 특수대학원 학과 신설(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5호의안 영남대학교 특수대학원 학과 신설(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신승훈 영남대학교 대학원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신승훈 영남대학교 대학원장: [붙임10] 영남대학교 특수대학원 학과 신설(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5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5호의안 영남대학교 특수대학원 학과 신설(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 [붙임11]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은 최경환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호의안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안) 승인의 건

의　　장: **제2호의안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제고를 위하여 법인 일반업무회계 운영수익금 중 550,000,000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수익용 예금)으로 취득하고자 한다고 하고,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2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2호의안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안) 승인의 건**은 최경환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3호의안 2026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의　　장: **제3호의안 2026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 2026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고 하고,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추경예산(A)	본예산(B)	증감(A)-(B)
7,618,610,000원	7,551,194,000원	67,416,000원

의　　장: 제3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3호의안 2026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은 김홍대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의　　장: 회의록 간서명 임원은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한재숙 이사장, 최외출 이사, 김홍대 이사로 선정한다고 하고,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2026. 10. 21.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 한 재 숙 한재숙

이 사 이 인 호 이인호

이 사 김 진 삼 김진삼

이 사 최 외 출 최외출

이 사 김 홍 대 김홍대

이 사 최 경 환 최경환

감 사 김 영 혜 김영혜

감 사 이 성 수 이성수

간서명	이사장	한 재 숙	이 사	최 외 출	이 사	김 홍 대

[붙임1] 영남대학교의료원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검토(안) 2차 보고의 건
(보고사항 제2호 관련)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2] 영남이공대학교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8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02.12.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6.10.21.	개정사유
<신설>	제5조의2(성과금) ① 교직원에게는 대학의 재정여건 및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금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성과금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률 및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성과금 지급근거 마련
<신설>	부칙(2026.10.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금 지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3] 영남이공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
(보고사항 제3호 관련)

1. 명예교수 신규임용

임용 유형	성명	생년월일	학과(계열) (퇴직시)	직위	발령사항	
					내역	일자
신규 임용	김학삼		건설시스템과	교수	▪ 영남이공대학교 명예교수에 임함	2026.09.01.

2. 전임교원 면직

임용 유형	성명	생년월일	학과(계열)	직위	호봉	발령사항	
						내역	일자
의원 면직	허정민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비정년 (교육중점)	▪ 교원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면직함	2026.08.31.
의원 면직	정유진		간호학과	조교수	정년 (연봉제)	▪ 교원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면직함	2026.09.30.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4] 영남대학교 (구)약학대학 증축 및 리노베이션(안)
(제10호의안 관련)

1. 사 업 명 : 영남대학교 (구)약학대학 증축 및 리노베이션 공사

2. 사업목적 : 의예과 교육공간 조성 및 산학협력단 기능 집적화

3. 건물부지 : 영남대학교 (구)약학대학 부지

4. 사업기간 : 법인이사회 승인 후 27개월(2026년 11월 ~ 2029년 1월)

5. 사업규모 (단위 : ㎡)

구분	연면적		증축 면적	비고
	증축 전	증축 후		
본관	3,980.88	4,360.68	379.8	지하 1층 ~ 지상 2층 리노베이션, 2층 외부 증축 및 승강기 설치
실험동	2,063.88	2,063.88	-	승강기 설치

6. 사업예산 :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5]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동 신축 변경(안)
(제11호의안 관련)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3">2차 변경 내용
(2024.10.16. 이사회 승인)</th><th colspan="3">3차 변경(안)</th></tr>
<tr><td rowspan="4">사업
규모</td><td>사업
부지</td><td colspan="3">대구 남구 대명동 317 일원
(의대 동편 농구장과 주차장 영역 전체)</td><td colspan="3">대구 남구 대명동 317 일원
(의대 동편 농구장과 주차장 부지)</td></tr>
<tr><td rowspan="2">연
면적</td><td rowspan="2">15,058㎡
4,555(평)</td><td>지하</td><td>3,388㎡
1,025(평)</td><td rowspan="2">8,556.15㎡
2588.24(평)</td><td>지하</td><td>없음</td></tr>
<tr><td>지상</td><td>11,670㎡
3,530(평)</td><td>지상</td><td>8,556.15㎡
2588.24(평)</td></tr>
<tr><td>층수</td><td colspan="3">지하 2층, 지상 7층</td><td colspan="3">지상 5층</td></tr>
<tr><td>기타</td><td colspan="6">※ 공사 상황에 따라 연면적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td></tr>
<tr><td colspan="2">사업예산</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업기간</td><td colspan="3">▪ 이사회 승인 변경 후 약 30개월
▪ 일정 계획(안)
- 2024.12.00.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 2024.12.00.~2026.08.00.
공사업체 선정 보류
- 2026.11.00.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
- 2029.02.00. 의과대학 연구동 준공</td><td colspan="3">▪ 이사회 승인 변경 후 약 31개월</td></tr>
</table>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6] 영남대학교 명예교수규정 개정(안)
(제12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06. 11. 3.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6.00.00.	개정 사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절차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절차, **임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구 수정 및 임무 추가
제2조(자격) 명예교수의 추대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교수 중 정년 기타의 사유로 퇴직 했거나 당해 학기말 퇴직예정인 교수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문상의 공적이 현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본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자**, 학술원 회원, 예술원 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제2조(자격) 명예교수의 추대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본 대학교의 **정년계열**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교수 중 정년 기타의 사유로 퇴직 했거나 당해 학기말 퇴직예정인 교수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문상의 공적이 현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본 대학교의 **정년계열**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본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자**, 학술원 회원, 예술원 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자구 수정 문구 명확화 문구 명확화 및 자구 수정
제3조(추대)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교수를 추대한다. ② <삭제> **<신설>**	제3조(추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명예교수 추대에 관한 심의기준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세부 사항 등을 정함에 대한 근거 마련
<신설>	**제3조의2(임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총장은 명예교수에게**	직책 및 담당업무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06. 11. 3.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6.00.00.	개정 사유
	전공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사항 신설
제4조(처우) **총장은 명예교수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나 강의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연구비 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4조(처우) **① 명예교수가 연구 또는 강의,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연구비, 강사료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따로 정한다.**	임무 수행에 대한 비용 항목 및 지급 근거 마련
제5조(해촉)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해촉한다	제5조(해촉) 명예교수가 **본인 또는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교수 추대에 관한 심의기준에 저촉되는**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해촉한다.	문구 명확화
<신설>	**부칙(2026.0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간서명	이사장	한재국	이 사	최원호	이 사	김홍기

[붙임7] 영남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규정 개정(안)
(제13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2. 8.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6.00.00.	개정 사유
제8조(징계의결 요구 및 통지)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서 사립학교법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징계사유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결 요구 및 통지)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서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징계사유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시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2(시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별 열거에서 인용 방식으로 변경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을 수수한 경우	1. (현행과 같음)	
2. 공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삭제**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4. **삭제**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2. 8.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6.00.00.	개정 사유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5. **삭제**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6. **삭제**	
7.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7. **삭제**	
<신설>	**8.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2026.0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간서명	이사장	한재숙	이 사	권태홍	이 사	

[붙임8]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
(보고사항 제4호 관련)

1. 교원 의원면직 현황

가. 정년계열 전임교원 의원면직 현황

임용 유형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직위	발령사항	
					내역	발령일자
면직	주지연		국어교육과	부교수	의원면직	2026. 8. 31.

나. 교육중점 전임교원 의원면직 현황

임용 유형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직위	발령사항	
					내역	발령일자
면직	안재석		교양학부	부교수	의원면직	2026. 8. 31.

다. 외국인교원 의원면직 현황

임용 유형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직위	발령사항		비고 (국적)
						내역	발령일자	
면직	연구 중점	마니두라이		건설시스템 공학과	조교수	의원면직	2026. 8. 4.	
		제인샌딥		신소재공학부	조교수	의원면직	2026. 8. 7.	
		산무감비그네쉬		화학공학부	조교수	의원면직	2026. 8. 11.	
		산지바무스 수간티		화학공학부	조교수	의원면직	2026. 8. 11.	
		팔라니사미 고빈다사미		화학공학부	조교수	의원면직	2026. 8. 14.	
		아람모하마드 자한길		생명공학과	조교수	의원면직	2026. 8. 25.	
		라자람라자모한		화학공학부	조교수	의원면직	2026. 9. 11.	
		릴라칸타레디		기계공학부	조교수	의원면직	2026. 9. 29.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2. 석좌교수 면직 및 추대 현황

임용유형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직위	발령사항		비고
					내역	발령일자	
신규추대	윤성규		환경공학과	석좌교수	특임석좌교수	2026. 8. 1.	1년차
	이채필		행정학과	석좌교수	특임석좌교수	2026. 8. 1.	1년차
재추대	이병완		경제금융학부	석좌교수	특임석좌교수	2026. 8. 1.	2년차
	조동성		경영학과	석좌교수	특임석좌교수	2026. 8. 1.	2년차
	전혜숙		약학부	석좌교수	특임석좌교수	2026. 8. 1.	2년차
	박승우		새마을국제개발학과(박)	석좌교수	특임석좌교수	2026. 8. 1.	2년차
	김동수		기계공학부	석좌교수	특임석좌교수	2026. 9. 1.	3년차
	한동근		국제개발새마을학과	석좌교수	특임석좌교수	2026. 9. 1.	2년차
	안대희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특임석좌교수	2026. 9. 1.	2년차
면직	주상우		기계공학부	석좌교수	특임석좌교수	2026. 6. 30.	-

3. 명예교수 추대 현황

임용유형	성명	생년월일	원소속	직위	발령사항	
					내역	발령일자
신규임용	최재목		철학과	교수	명예교수 추대	2026. 9. 1.
	손승회		역사학과	교수		
	배현석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송인환		해부학교실	교수		
	이경희		내과학교실	교수		
	이채훈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		
	변광인		식품경제외식학과	교수		
	김희수		회화과	교수		
	한상권		트랜스아트과	교수		
	김혜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9]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학과 폐지(안)
(제14호의안 관련)

학과간 협동과정 학과	한국학과(2027.3.1. 폐지)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10] 영남대학교 특수대학원 학과 신설(안)
(제15호의안 관련)

일반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2027. 3. 1. 신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붙임11]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제1호의안 관련)

현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 2026.08.19.	변경(안)	변경 사유
제6장 교직원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6장 교직원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 사항 반영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2026.10.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